

## 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■

### 2011. 12. 29. 선고 2011헌바3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위헌소원 사건 : 합헌결정

김영수 변호사

1.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,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여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구 부가가치세법(1993. 12. 31.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고, 2010. 1. 1.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의2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관청에 자신의 사업내역을 신고하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(공급가액)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,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, 폐업한 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,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적정성·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와 폐업한 자를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조세경감 조치 또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, 그와 같은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.

2. 다운로드 : [2011헌바3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위헌소원](#)